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거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3. 11. 29(수) 10:00

###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# 검토보고서

###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인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(문화환경국 환경과 소관)



# 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457호

나. 제 출 자 : 고영찬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
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##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한 대비·대응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, 금천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라.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(안 제5조 ~ 제10조)
- 마.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(안 제11조)
- 바.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,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(안 제12조 제14조)
- 사. 담당공무원 교육・훈련, 재정 지원 등(안 제15조 및 제16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 - 1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의2, 제12조, 제23조, 제23조의4

2)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4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3. 11. 16. ~ 2023. 11. 22.

##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7조의2 위임 사항에 따라 금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에 대비하여 금천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# 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3)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(안 제4조)
  -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6조에 따라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한 것은 금천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획수립으로 타당하다 봄
- 4)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(안 제5조 제10조)
- 5)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(안 제11조)
  - 금천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화학안전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.
- 6)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,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(안 제12조 제14조)
  - 화학사고 발생신고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주민에게 고지하도록

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주민혼선을 방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주민안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됨

7) 담당공무원 교육·훈련, 재정 지원 등(안 제15조 및 제16조)

#### 다. 검토의견

####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안전 이행실태 점검 결과

#### ㅁ 감독 개요

- (대상) 화학물질 제조·수입 사업장,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등 220개소(연간 100 톤이상 59개소, 100톤미만 161개소)
- · (기간) '23.7.10.~8.31.(8주간)

#### □ 감독 결과

- (전체) 감독실시 사업장 220개소 중 위반사업장은 97개소(44.1%), 위반건수는 269건(MSDS 위반 223건,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 46건)
  - **사법처리**\* 2개소(4건), **과태료** 89개소(254건, 185백만원), **시정명령** 13개소 (42건), **시정지시** 78개소(185건) **실시** 
    - \*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및 설치기준 미흡, 호흡용보호구 미지급, 특별관리물질 미고지 등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해당
-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실태조사에서 '화학물질'을 다루는 작업장의 관리실태가 제도기준에 미흡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 조사됨. 따라서 금천구 관내에 유사시 화학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의 모범적 정책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봄.
- 본 조례안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7조의2 위임에 따라 금천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・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.

### 관계법령

#### □ 「화학물질관리법」

[시행 2022. 2. 18.] [법률 제18420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5. 26.>

- 1. "화학물질"이란 원소·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 한다.
- 2. "유독물질"이란 유해성(有害性)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.
- 3. "허가물질"이란 위해성(危害性)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, 수입,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.
- 4. "제한물질"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.
- 5. "금지물질"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,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.
- 6. "사고대비물질" 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(急性毒性)·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 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.
- 7. "유해화학물질"이란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,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.
- 8. "유해화학물질 영업"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.

- 9. "유해성"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.
- 10. "위해성"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.
- 11. "취급시설"이란 화학물질을 제조, 보관·저장, 운반(항공기·선박·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)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.
- 12. "취급"이란 화학물질을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13. "화학사고" 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, 시설 결함·노후화, 자연재해,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·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.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·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,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, 조사·연구, 기술 개발, 전문인력 양성,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,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에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6. 1. 27.〉
- 제6조(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)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·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
- 2.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
- 3.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
- 4.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
- 5.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

- 6.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 · 교육
- 7.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
- 8.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·장비 등의 동원 방법
- 9.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·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〈개정 2017. 11. 28.〉

- 1.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·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·시행
- 2.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· 운영
- 3.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
- 4.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
- 5.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
- 6.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·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[본조신설 2016. 5. 29.]

제12조(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)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1.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.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.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23조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·제출)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

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(이하 "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 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연구실
- 2.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학교
- 3.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 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·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시설
-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- 2. 유해화학물질의 품목, 농도,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
- 3.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 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
-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(이하 "주요취급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,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(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)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

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3. 31.]

제23조의4(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(이하 "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1.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
- 2.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·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0. 3. 31.]

#### □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

[시행 2023. 10. 4.] [환경부령 제1056호, 2023. 10. 4., 일부개정]

제19조의4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)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(이하 "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.

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.

- 1. 개별통지 방법: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
- 2. 개별설명 방법: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
- 3. 집합전달 방법: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
- 4. 그 밖의 고지 방법: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·반상회보·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
-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21. 4. 1.]

#### □ 「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」

[시행 2023. 7. 24.] [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, 2023. 7. 24., 일부개정]

제7조(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의 효과적인 실행과 환경 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·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지역환경보건계획(이하 "지역계획"으로 한다)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1.12.30〉

- ② 시장은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세워야 한다. 〈신설 2021.12.30〉
-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〈신설 2021.12.30〉
- 1.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- 2.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
- 3.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
- 4. 산업단지, 폐광지역,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
- 5.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 ·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·

재정적 지원

- 6.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
- 7.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〈신설 2021.12.30〉
- 1.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
- 2. 계산착오, 오기,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
- ⑤ 시장은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〈신설 2021.12.30〉
- ⑥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서울특별시환경보건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21.12.30〉
- ⑦ 시장은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지역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 〈개정 2021.12.30〉
- ⑧ 제1항에 의한 지역계획을 수정해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21.12.30〉
- ⑨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의 환경계획에 포함시 켜야 한다. 〈개정 2021.3.25, 2021.12.30〉

[제목개정 2021.12.30.]